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8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조인철 · 정준호 · 박용갑
정진욱 · 주철현 · 서삼석
문진석 · 김우영 · 김의겸
이정현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공익신고를 통하여 과징금 · 과태료 · 벌금 등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 · 징수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그 성과가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 ·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 용도 · 관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하되,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금전적 제재금”이란 신고포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공익신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가산금, 부담금, 몰수금, 추징금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을 말한다.
4. “공익신고활성화사업”이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상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외의 사업을 말한다.
5. “포상금법률”이란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신고포상금의 지급 또는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징수가 수반되는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재원(財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요건·한도·금액·절차 및 중복 지급 금지·환수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포상금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고포상금 지급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신고활성화사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③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
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 신청 및 배분) ① 관계기관의 장은 기금의 재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신고포상금 지급 수
요, 금전적 제재금의 수납 실적, 기금 집행 실적, 중복 지급 방지 조
치 및 기금의 재정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금
을 배분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실적
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0조(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4조(기금 계정의 설치)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환수금의 납입)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환수한 경우 그 환수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배분받은 기금을 배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배분된 기금이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배분을 취소하고 그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평가) ①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공익신고 건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공익신고활성화사업의 추진 실적, 기금 집행 실적, 중복 지급 방지 조치 및 부정 지급 방지 조치를 평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기금의 설치, 심의회의 구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의 및 하위법령의 마련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공익신고장려기금법」